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호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79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26.

발 의 자 : 안호영 · 김의겸 · 김주영
이춘석 · 조계원 · 김윤덕
전진숙 · 소병훈 · 박희승
이소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제7조의3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하며, 이하 “도급인”이라 한다)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제도를 규정하고 있었으나, 최근 건설공사를 포함한 도급인에 대한 임금 구분지급 의무에 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는 「근로기준법」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(3.12.)되고, 공포(4.7.)되어 시행 예정이므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3 및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3호까지 삭제).

법률 제 호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을 삭제한다.

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제7조의3(임금비용의 구분지급</u> <u>및 확인) ① 국가, 지방자치단</u> <u>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</u> <u>규모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</u> <u>하는 자(발주자를 포함하며, 이</u> <u>하 “도급인”이라 한다)는 그 공</u> <u>사를 도급받은 자(이하 “수급</u> <u>인”이라 한다)가 건설근로자에</u> <u>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</u> <u>하는 비용(이하 “임금비용”이라</u> <u>한다)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</u> <u>여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</u> <u>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</u> <u>한다.</u> <u>② 도급인은 제1항에 따라 수</u> <u>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 대한</u> <u>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수</u> <u>급인이 전월(前月)[임금비용을</u> <u>최초로 지급한 월(月)에 건설공</u> <u>사가 시작된 경우는 제외한다]</u> <u>에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지급</u> <u>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</u> <u>한다.</u>	<u><삭 제></u>

③ 도급인은 제2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,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.

제26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제7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지 아니한 자

2. 제7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자

3. 제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

제26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<삭 제>

<삭 제>

<삭 제>

4. ~ 9. (생략)	4. ~ 9. (현행과 같음)
③ · ④ (생략)	③ · ④ (현행과 같음)